

성신여자대학교 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내규

제정 2026. 05. 29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(이하 “**연구개발비 사용 기준**”이라 한다) 제102조에 따라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**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**”란 국가연구시설·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(이하 “**혁신법**”이라 한다)에 따라,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·장비비의 일부를 적립 및 통합관리하여 유지·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.
2. “**통합관리계정**”이란 통합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를 적립하여 지속 사용하도록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에서 개설·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.
3. “**통합관리 단위**”란 통합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계정의 설정 단위를 말하며, 연구책임자 단위, 공동활용시설(연구개발기관의 조직 또는 단과대 및 학과 단위로 공동 활용 연구시설·장비를 집적하여 운영하는 시설)단위,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구분한다.
4. “**통합관리계정 책임자**”(이하 “**계정책임자**”라 한다)란 적립된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를 직접적으로 관리·사용하는 통합관리 단위별 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.
5. “**관리부서**”란 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운영·관리를 위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중앙실험지원센터 중앙기기실을 말한다.
6. “**연구 시설·장비심의위원회**”란 「연구 시설·장비심의위원회 운영 내규」에 따라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에서 연구시설·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(이하 “**위원회**”라 한다)를 말한다.
7. 그 외 용어의 정의는 「성신여자대학교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기준은 혁신법을 적용하고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원의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에 적용한다. 다만, 지원기관의 규정이나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제2장 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

제4조(통합관리계정의 설정 및 관리)

① 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계정은 연구책임자, 공동활용시설,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, 단위별 계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공동활용시설 단위 계정책임자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산학협력단장은 위원회를 통해 이를 결정할 수 있다.

1. 연구책임자 단위 계정책임자: 연구책임자
2. 공동활용시설 단위 계정책임자: 관리기관장
3. 연구개발기관 단위 계정책임자: 중앙기기실장

②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연구자 및 기존 통합관리계정에 추가 적립을 하고자 하는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통합관리 단위를 선택하고 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계정 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 계정 설정 및 적립을 요청하고, 관리부서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적립금액의 적절성과 연구시설·장비 운영현황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 및 적립할 통합관리계정의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. 다만 계정 설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할 수 있다.

③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통합관리 단위별로 1개의 계정만 개설할 수 있다. 단, 공동활용시설 단위 계정은 1명이 2개 이상의 공동활용시설 책임자인 경우에 한해 복수의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될 수 있다. 공동활용시설 단위 계정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, 계정책임자는 [별지 제4호 서식]의 공동활용시설계정 책임자 변경신청서를 연구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통합관리계정의 적립 한도)

① 통합관리계정의 적립 잔액은 연구책임자 단위는 3억 원, 공동활용시설 단위는 7억 원, 연구개발기관 단위는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계정의 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적립한도 증액 신청서[별지 제2호 서식]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고, 관리기관은

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공문으로 적립한도 증액을 신청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6조(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의 계상과 적립)

-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비 중 연차별 수정직접비의 10% 이내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 계상액을 결정하고, 계정 한도내에서 그에 따른 계상액을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. 다만, 국가연구개발사업(수탁 과제)의 경우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립 가능하다.
- ② 협약 시 계상된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는 협약 체결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협약 변경을 통해 적립할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
 1. 연구개발계획서에 통합연구시설·장비비를 오기입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
 2. 다년도 연구개발과제로서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기 이전인 경우(단, 첫해의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는 제외한다)
- ③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연구시설·장비의 원활한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관 지원금(교비, 간접비 등)과 운영·활용 과정에서의 시설·장비 이용료 수입 등을 통합관리계정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. 단, 기관 지원금, 이용료 수입 등을 통합관리계정에서 적립·사용할 때에는 회계 규정 등 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7조(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의 이체)

- ① 관리부서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를 변경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된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를 90일 이내에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하여야 하며,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체 금액을 이체하여야 한다.
- ② 연구개발비가 분할 지급되는 경우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를 분할 이체할 수 있으며, 최초 분할금액은 최초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체하여야 하고, 전체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는 협약종료일(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연도 협약종료일)로부터 30일 이전에 전체 금액을 이체 완료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를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 이체(적립) 신청서[별지 제3호 서식]를 연구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의 사용)

- ①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는 관리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었거나 그 외의 재원으로 구축된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연구시설·장비 중에서 ZEUS(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, 연구시설·장비종합정보시스템)에 등록된 연구시설·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
 1. 연구시설·장비의 유지·보수(장비의 점검, 수리, 장비성능 유지를 위한 품질보증 약정 등을 포함)
 2. 연구시설·장비의 임차·사용대차(기존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체결한 임차·사용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, 계약 이후 소유권이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.)
 3. 연구시설·장비의 기관 간 양도 및 기관 내 공동활용시설로 재배치하는 이전·설치(단, 기관 간 양도의 경우, ZEUS를 통해 이전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)
-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지 않은 연구시설·장비에 대하여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, 관리부서에서 해당 연구시설·장비의 ZEUS 등록 여부, 과제계획서에 해당 연구시설·장비를 활용 대상 장비로 명시하였는지 여부를 모두 확인한 후, 증빙을 첨부하여 ZEUS에 신청·승인을 받아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 사용 대상 장비 리스트로 추가하여야 한다.
- ③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관리하며,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

제9조(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의 집행)

- ①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, 계정별 예산 범위 내에서 산학연구지원시스템에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의 청구 내역을 등록하고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 청구서[별지 제5호 서식]와 증빙 서류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관리부서는 제8조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기타 지출에 필요한 증빙을 검토하여 통합관리계정에서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를 지출하여야 한다.
- ③ 관리부서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거나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,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가 제8조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제10조(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의 점검)

- ①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0조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,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의 통합관리계정 이체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관리부서는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를 제8조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하고,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.
- ③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보고 후 [별지 제6호 서식]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1. 자체점검 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(이하 “**점검대상기간**”이라 한다) 중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를 제8조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지출한 경우
 2. 점검대상기간 중 최초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에 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기로 결정한 금액과 다르게 해당 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였거나 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기관 내 다른 계정으로 이체 또는 대체한 경우
 3. 점검대상기간 중 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계정별 적립한도를 초과하여 적립한 경우
 4. 점검대상기간 중 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 대상이 아닌 연구개발비를 통합관리한 경우
- ④ 관리부서 및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운영 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자료를 요청할 시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관리부서는 운영 현황 점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7조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, 요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동 기준 [별지 제7호 서식]에 따라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ZEUS를 통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요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[별지 제8호 서식]에 따라 개선계획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⑥ 관리부서는 제5항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시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[별지 제16호 서식] 및 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·관리 매뉴얼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하며, 개선계획 및 조치, 이행결과 보고는 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한다.

제11조(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의 이관·반납)

- ① 통합관리계정 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의 잔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다. 단, 공동활용시설 또는 연구개발기관 단위의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는 타 연구시설 또는 타 연구개발기관으로 이전할 수 없다.
 1.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이직과 동시에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승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적립한 연구시설·장비비를 잔여 연구개발기간 비율로 산출하여 변경된 통합관리기관의 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.
 2.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해당 통합관리계정의 잔액은 기존 통합관리기관의 공동활용시설 또는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이관하여 제8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.
- ② 혁신법 제12조 제3항 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또는 그 밖의 지원기관이 정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국가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연구기간 대비 잔여 연구기간에 상당하는 비율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의 잔액을 산출하여 관리부서를 통해 해당 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.
- ③ 관리부서는 공동활용시설 단위 조직·부서가 변경·폐쇄 될 경우, 관련 장비를 이관 받는 조직·부서를 검토하여 제4조 제2항에 따라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 잔액을 승계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12조(관계서류의 보관) 계좌이체 결과 등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의 증빙자료는 「연구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사용지침」에 따라 관리하되, 증빙자료가 생성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3조(기타)

-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 「성신여자대학교 교외 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」, 「중앙실험지원센터 규정」, 「연구 시설·장비심의 위원회 운영 내규」 등에 따르며,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연구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- ② 관리부서는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별지 서식을 수정·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③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의 관리와 관련한 위원회의 심의는 「연구 시설·장비심의위원회 운영 내규」를 통해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간소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기준은 시행 이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연구시설·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한도 증액 신청서

신청기관	기관명			
	대표자			
신청계정	계정단위	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개발기관단위 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활용시설단위 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책임자단위		
	계정번호	기관에서 관리 중인 계정번호 기재		
	계정책임자	계정 책임자 성명 기재		
증액 요청 적립한도	(기존) 00억 원 → (증액) 00억 원 요청하는 증액 한도 기재 (최초 계정단위별 적립한도 내에서 1억 원 단위로 신청 가능)			
한도 증액 요청 사유				
실무연락 책임자	부서명		직 위	
	성 명		연락처	
	FAX		E-Mail	

우리 기관은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 제103조제3항에 따라
 상기 연구시설·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한도의 증액을 신청합니다.

※ 제출서류 : 신청 계정의 통합연구시설·장비비 적립·사용 내역 1부.

년 월 일

연구개발기관장: (직인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

연구시설·장비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

<총괄표>

(단위: 원, %)

연구시설·장비비 총액(A)	사용(집행)한 연구시설·장비비 (B)	사용(집행) 비율 (C=B/Ax100)

<세부사항>

○ 연구시설·장비비통합관리 자체점검 실적 (전년도 1.1.~12.31.)

(단위: 원)

점검조치 구분	조치 결정통지일 (공문기준)	조치대상 계정구분	조치대상 계정책임자	조치대상 금액	조치완료 여부	비고
<i>용도 외</i>						
<i>회수</i>						
<i>적립대상 미준수</i>						
<i>적립한도 미준수</i>						
합계					<i>(완료건수 기재)</i>	

연구시설·장비비통합관리기관 개선계획서

제출기관	기관명			
	대표자			
개선 요구 사항	과학기술정보통신부 '개선 요구' 공문에 제시된 '개선 요구 사항' 기재			
개선계획-1 (계정 제한 조치)	조치 대상 계정	계정 제한 조치 대상 계정번호 기재		
	계정책임자	계정 제한 조치 대상 계정책임자 성함 기재		
	부과 조치	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·관리 매뉴얼 내 '기관 내부 개선 조치 가이드라인'을 참고하여 통합관리기관의 자체장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 기재		
개선계획-2 (재발 방지 방안)	동일 개선 필요 사항이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 방지 방안 기재 (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, 개선 결과 보고 시 개선이 완료되어야 함)			
실무연락 책임자	부서명		직 위	
	성 명		연락처	
	FAX		E-Mail	

우리 기관은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 제107조제2항에 따라,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 또한, 제출된 개선계획은 기관 내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및 승인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※ 제출서류 : 계정 제한 조치 결정 및 개선계획 승인 관련 자체장비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.

년 월 일

연구개발기관장:

(직인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

210mm×297mm [백상지 80g/㎡]

연구시설·장비비통합관리기관 개선결과보고서

제출기관	기관명			
	대표자			
개선 요구 사항	과학기술정보통신부 '개선 요구' 공문에 제시된 '개선 요구 사항' 기재			
개선계획-1 (계정 제한 조치)	조치 대상 계정	계정 제한 조치 대상 계정번호 기재		
	계정책임자	계정 제한 조치 대상 계정책임자 성함 기재		
	부과 조치	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·관리 매뉴얼 내 '기관 내부 개선 조치 가이드라인'을 참고하여 통합관리기관의 자체장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 기재		
개선계획-2 (재발 방지 방안)	동일 개선 필요 사항이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 방지 방안 기재 (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, 개선 결과 보고 시 개선이 완료되어야 함)			
실무연락 책임자	부서명		직 위	
	성 명		연락처	
	FAX		E-Mail	

우리 기관은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 제107조제2항에 따라,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 또한, 제출된 개선계획은 기관 내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및 승인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※ 제출서류 : 계정 제한 조치 결정 및 개선계획 승인 관련 자체장비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.

년 월 일

연구개발기관장:

(직인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